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

---

1989. 11. 4. 제정  
2005. 1. 29. 부분개정  
2006. 1. 21. 부분개정  
2007. 1. 19. 부분개정  
2007. 8. 17. 부분개정  
2008. 1. 25. 부분개정  
2008. 8. 29. 부분개정  
2012. 9. 24. 부분개정  
2013. 2. 22. 부분개정  
2014. 8. 22. 부분개정  
2016. 8. 19. 부분개정  
2018. 2. 23. 부분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칭하고 경실련으로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선전
5. 시민고발센터운영 및 법률구조
6.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자격 및 종류]

1. (일반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 연합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반회원명부에 등록하는 자는 이 연합의 일반회원이 된다.
2.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는 이 연합의 정회원이 된다.
3. (후원회원)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 제6조 [의무] 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 제7조 [권리]

- ① 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전(前)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8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장의 청구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청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9조 [가입,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제3장 조 직

**제10조 [회원대회]** 회원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사업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 [중앙위원회]

- ① (지위) 중앙위원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 (구성) 중앙위원회는 150인 이상 3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1인의 의장과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 ③ (선출)
  1. 중앙위원은 이 연합의 각 부문조직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조직별 중앙위원의 배분과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권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2.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선출
  3. 규약의 개정
  4.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
  7. 지부조직의 설치 및 폐지
  8. 회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 ⑤ (소집) 중앙위원회는 연1회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⑥ (의결) 중앙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권한의 위임) 중앙위원회는 다음 중앙위원회이전까지 그 권한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한다. 다만 공동대표는 이 연합의 행정사무 및 재정회계 등 일부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지도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자문회의]** 상임집행위원회는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15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6조 [상임집행위원회]**

- ① (지위) 상임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 ②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50인 이상 8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 ③ (선출)
  - 1. 상임집행위원은 중앙위원회와 각 부문조직에서 선출하며 조직별 상임집행위원의 배분과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2.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상임집행위원장 후보추천 및 선출절차를 담당할 인선위원회를 둔다.
- ④ (조직)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권한)
  - 1.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 2. 중앙위원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 4. 고문, 지도위원 위촉
  - 5. 상임집행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
  - 6.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후보의 추천
  - 7. 사무총장 선출
  - 8.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
  - 9.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10. 특별기구, 부설기관, 지부조직, 회원조직의 사고지부 및 활동정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
  - 1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⑥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월 1회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상임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⑦ (의결)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사무국]**

- ① 이 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무총장은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 ②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집행위원회에 그 승인을 요청한다.
- ③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을 제외한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상임집행위원장과 협의의를 거쳐 행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18조 [위임]** 중앙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출석권은 위임할 수 있다.

### **제4장 활동조직**

#### **제19조 [정책위원회]**

- ①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제20조 [조직위원회]**

- ① 이 연합의 아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1. 지역조직 활동의 협의 및 지원
  2. 전국 및 지역공동사업에 대한 협의 및 지원
  3. 기타 전국적 통일성 및 협력관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② 조직위원회는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제21조 [시민입법위원회]**

- ① 이 연합의 시민입법운동을 위해 시민입법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민입법위원장인 이를 총괄한다.
- ② 시민입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2조 [국제위원회]**

- ① 이 연합의 국제적 연대활동을 위해 국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국제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3조 [윤리위원회]**

- ① 연합의 도덕적,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4조 [경실련아카데미]**

- ① 이 연합의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 시민들에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교육 훈련을 위해 경실련 아카데미를 설치한다.
- ② 경실련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5조 [지부조직 및 지역경실련협의회]**

- ① 이 연합은 지역에 지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부는 0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칭한다. 지부의 설립, 운영,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② 지부조직 상호간의 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해 지역경실련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③ 지부조직은 이 연합의 정책적 일관성과 조직적 통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6조 [회원조직]** 이 연합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회원조직을 둘 수 있다. 회원조직의 설립, 운영 및 폐지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7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

- ① (임기) 공동대표, 중앙위원회 의장단, 중앙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감사, 조직위원장, 국제위원장, 시민입법위원장, 각 특별위원회 및 정책소위원회 위원장, 각 특별기구의 이사장, 대표 및 운영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임기개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중앙위원회 선출로부터 차기년도 1차 중앙위원회까지로 한다.

- ③ (연임제한) 경실련 및 산하 각 특별기구의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집행위원, 중앙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지역경실련은 표준규약을 따른다.
- ④ (결격) 정당에 가입한 자는 이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1항에 열거된 임원 외에 지역조직 또는 부문별 조직에서 위 1항의 임원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

### 제28조 [특별기구와 부설기관]

- ① 이 연합은 연합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② 특별기구는 (사)경제정의연구소, (사)경실련 통일협회,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권익센터 등이다.

**제29조 [운영 원칙]** 각 특별기구는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연합의 규약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별도의 정관이 이 규약이나 이 규약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하 규약 등이라 한다)에 어긋나는 경우 이 규약 등이 우선한다.

### 제30조 [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성립조건]

- ① 각 특별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
  2. 재정의 독립
  3. 이 연합의 운영비용의 일정한 분담금 납부
- ② 전항 제1호와 제3호의 회원의 일정 수와 분담금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제6장 예산 및 결산

**제31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결산 공개]** 이 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5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부 칙

**제1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대회 이후의 규약은 중앙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준한다.

**제3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규약개정]** 이 규약은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약에 의해 첫 번째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공동대표, 중앙위원, 고문, 지도위원의 임기만료일은 199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② 상임집행위원, 상임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연구위원장, 조직위원장 등 임기 1년의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③ 현직 사무총장의 임기만료일은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2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2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3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을 제4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4차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 중앙위원, 고문, 지도위원의 임기는 1997년 7월 7일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4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 ① 이 규약 개정 전에 선임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규약 개정 후 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 ② 이 규약 개정 전의 연합의 산하기구 및 각 위원회는 개정 후 규약에 의한 기구로 본다.
- ③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선출직 중앙위원은 규약 개정 전 중앙위원회가 추천한다.
- ④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은 규약 개정 전 상임집행위원회가 추천한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5기 5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8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6기 2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7기 5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8기 3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9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9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9기 4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0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현 조직위원장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0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2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2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4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